『시설물정보현황』
통계정보보고서

2021. 12.

본 이용자용 통계정보보고서는 정기통계품질진단 수행과정에서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한 보고서로 작성기준 시점에 따라 현재의 통계작성 정보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작성일자: 2022.03.07.

국토안전관리원

〈차 례〉

Ⅰ. 통계개요 ····· 1

Ⅱ. 통계의 작성목적 및 이용 ····· 4

Ⅲ. 통계설계 ····· 6

Ⅳ. 자료수집 ····· 14

Ⅴ. 자료처리 ····· 18

Ⅵ. 통계공표 및 품질평가 ····· 21

Ⅶ. 통계작성 문서화 및 이용자서비스 ····· 26

Ⅷ. 통계기반 및 개선 ····· 29

Ⅸ. 참고문헌 ····· 31

◆ 보고서 개요 ◆

이 보고서는 시설물정보현황을 생산하기 위하여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설명한 것이다. 보고서의 작성목적은 통계작성 배경, 연혁, 이용자 및 용도와 조사에서 이용되는 개념과 방법론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알고자 하는 통계작성 담당자(통계 전문이용자, 품질진단자 또는 승인담당자)에게 통계과정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통계개요, 통계설계, 자료수집, 자료입력 및 처리, 통계 결과 및 공표, 이용자서비스, 통계 기반 및 개선 등에 대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다.

Ⅰ. 통계개요

1. 통계명

○ 시설물정보현황(승인번호 : 제328001호)

2. 법적근거

○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근거하여 승인된 일반통계

- 승인통계 제328001호

○ 시설물정보현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제55조를 근거로 수행하고 있음

> **제55조(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3. 시설물 정보 보고방법

○ 보고체계

- 시설물의 관리주체 또는 사업주체(시설물정보 등록) → 국토안전관리원(검토·승인)

○ 보고방법

- 국토안전관리원(시설성능관리실)에서 운영 중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FMS’)을 통해 대상 시설물 및 유지관리 정보 보고

4. 통계작성기관/부서명

○ 국토안전관리원 / 기반시설본부 시설성능관리실

5. 작성 및 공표주기

○ 작성 및 공표주기

- 1년

6. 통계작성과정 개관

□ **통계작성과정 전반에 대한 일정별 수행업무**

시기	내용	주체
상시	시설물정보 등록	사업주체 및 발주청

시기	내용	주체
	시설물의 준공 전 시설물 관리대장, 설계도서 제출, 준공 후 안전점검종합보고서, 감리보고서 등 관련도서 제출	
	안전점검등,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결과 제출	관리주체 및 점검진단업체
	시설물정보 검수 및 승인	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관리대장 확인	국토안전관리원
3월, 6월, 9월, 12월	분기별 시설물정보 백업 데이터 작성 및 국토교통부 분기별 자료 제공	국토안전관리원
5월	통계연보 발간, 통계청 시설물정보현황 공표	국토안전관리원
6~10월, 12월	FMS 사용자 대상 교육 실시	국토안전관리원

7. 통계연혁

○ FMS 최초 구축 시기

- 2003년

○ 개발 배경

-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의 정보를 수집, 품질관리 및 분석하여 통계 현황을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국가 주요시설물의 정책 수립과 관련 연구에 중요한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 개발

○ 연혁 및 변경 또는 개편 이력

- 1995.01.0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법률 제4922호)
  04.19. 시설안전기술공단 설립
- 2001.11.30. 정보화사업단 발족
- 2003.01.02. 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FMS) 운영 시작
- 2007.03.26. 국가 승인통계 승인(시설물정보현황, 승인번호 : 제328001호)
- 2010~2021. 시설물정보현황 통계청 통계(KOSIS) 등록
- 2015~2021. 시설물통계연보(e-book) 발간

8. 관련 용어 정의

용어	정의
시설물정보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물의 기본현황 및 상세제원 정보

용어	정의
관리주체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취합기관	관리주체가 시설물안전법 제55조에 따라 FMS에 입력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안전점검등 및 유지관리 결과 등을 확인하여 승인하는 기관* *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주체가 입력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실적을 확인하여 승인하는 해당 공공기관 소속부서의 장을 말함
시설물통합 정보관리시스템(FMS)	시설물안전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된 시스템으로 시설물관리계획,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등 안전점검등에 관한 사항과 시설물의 정보, 안전진단전문기관·유지관리업자의 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Ⅱ. 통계의 작성목적 및 이용

1. 통계 작성목적

□ 목적

○ 시설물정보현황은 국가 주요시설물 관리를 위한 정책 및 연구 등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의 자료를 수집 및 관리하여 시설물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시

□ 활용 분야

○ 국가 시설물 관련 정책 수립 및 연구 활용
○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에서 시설물정보현황 통계 자료 제공
○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시설물정보현황 통계 자료 제공
○ 국회의 관련 입법 활동 지원
○ 감사원의 시설물 관련 감사 업무 지원
○ 국토교통부의 정책 수립 지원
○ 행정안전부의 국가안전대진단 등 안전관련 업무 지원
○ 지자체 시설물의 교부세 지원 자료 제공

□ 관련 통계에 대한 사전 검토

○ 통계 기획단계에서 국내유사통계, 동일 분야의 통계자료 등 참고할 수 있는 통계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시설물정보현황”은 시설물 관리주체가 시설물 정보를 입력하고 중앙행정기관,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등의 승인을 거쳐 취득된 정보에 대한 국내 유일의 통계임

○ 통계 기획단계에서 검토한 국내 통계는 다음과 같음

조사명	통계종류	조사체계	조사목적
건설업조사	지정통계 / 조사통계	건설업체 → 건설관련협회 → 통계청	우리나라 건설업부문의 구조 및 산업 활동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건축물통계	일반통계 / 보고통계	시·군·구 → 시·도 → 국토교통부	전국 건축물에 대한 용도별 층수 등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여 건축경기 예측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조사명	통계종류	조사체계	조사목적
수자원현황	일반통계 / 보고통계	관련부처,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 국토교통부	합리적인 물이용 및 배분, 관리, 수요관리 등 국가수자원 계획 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
시설물 유지관리업조사	일반통계 / 조사통계	해당업체 →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연간 공사실적(계약, 기성)을 종합적으로 집계하여 정부가 건설업 관련 정책수립과 발주자의 발주 회원사의 경영, 수주계획 입안을 위해 기초 자료 제공
한국수문조사	일반통계 / 보고통계	수문관측소 → 한강홍수통제소 → 국토교통부	수자원개발 연구 및 국토개발계획 입안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주택건설실적 통계	일반통계 / 보고통계	시·군·구(주택건축과) → 시·도(주택건축과) →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건설관련 정책자료 등으로 활용

2. 주요 이용자 및 용도

□ 통계의 주요 이용자와 이용자 유형별 용도

○ 국토교통부 및 중앙행정기관 : 국가 주요 시설물 관리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 소관 주요 시설물 관리 정책 수립

○ 학계 및 연구기관 : 국가 주요 시설물 관련 연구 수행

○ 국민 및 기타 : 국가 주요시설물 현황 통계 파악

○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체 등 :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점검·진단실적보고 및 관리

3. 이용자 의견조사

□ 의견조사 방법

○ FMS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설문조사*

* 시설물 유지관리 정책설명회 및 찾아가는 FMS 사용자 맞춤 설명회 시 실시

□ 조사항목

○ FMS 정보 활용 및 이용 편의 관련 항목

○ FMS 통계 개선사항

○ FMS 이용 만족도 등

Ⅲ. 통계설계

1. 보고양식 설계

1-1 개념 및 정의

□ 주요개념

○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제3종시설물을 말한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및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에서 정한 시설물관리대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기본현황, 상세제원, 내진정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이력 등의 정보를 작성하고 관리한다.

□ 항목별 정의

○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은 중요도와 규모를 고려하여 제1·2·3종시설물로 분류되며 시설물의 종류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1] 및 [별표1의2]와 같음

- 제1종시설물 :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
- 제2종시설물 :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
- 제3종시설물 :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시설물안전법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시설물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1]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종류>

구분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1. 교량		
가. 도로교량	1)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2)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3)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4) 폭 12미터 이상이고 연장 5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1) 경간장 50미터 이상인 한 경간 교량 2)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3)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복개구조물로서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나. 철도교량	1) 고속철도 교량 2)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3)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교량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구분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4)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2. 터널 가. 도로터널	1)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2) 3차로 이상의 터널 3)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터널 2)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연장 300미터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3)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차도로서 터널구간의 연장이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나. 철도터널	1) 고속철도 터널 2) 도시철도 터널 3)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터널
3. 항만 가. 갑문	갑문시설	
나. 방파제, 파제제 및 호안	연장 1천미터 이상인 방파제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방파제로서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2) 연장 500미터 이상의 파제제 3) 방파제 기능을 하는 연장 500미터 이상의 호안
다. 계류시설	1) 20만톤급 이상 선박의 하역시설로서 원유부이(BUOY)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2) 말뚝구조의 계류시설(5만톤급 이상의 시설만 해당한다)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원유부이식 계류시설로서 1만톤급 이상의 원유부이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2)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말뚝구조의 계류시설로서 1만톤급 이상의 말뚝구조의 계류시설 3) 1만톤급 이상의 중력식 계류시설
4. 댐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댐으로서 지방상수도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5. 건축물 가. 공동주택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1)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각 용도별 시설

구분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의 합계를 말한다)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3)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 역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4)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6. 하천		
가. 하구둑	1) 하구둑 2) 포용조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방조제로서 포용조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나. 수문 및 통문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通門)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수문 및 통문으로서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2)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수문 및 통문
다. 제방		국가하천의 제방[부속시설인 통관(通管) 및 호안(護岸)을 포함한다]
라. 보	국가하천에 설치된 높이 5미터 이상인 다기능 보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보로서 국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 보
마. 배수펌프장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배수펌프장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배수펌프장으로서 국가하천의 배수펌프장 2)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배수펌프장
7. 상하수도		
가. 상수도	1) 광역상수도 2) 공업용수도 3)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방상수도
나. 하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8. 옹벽 및 절토사면		1)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 2) 지면으로부터 연직(鉛直)높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 상단으로부터의 높이) 30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구분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9. 공동구		공동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3종시설물의 범위>

1. 토목분야: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시설물(마목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시설물

구분	대상범위
가. 교량	1)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인 도로교량 2)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인 교량 3) 연장 100m 미만 철도교량
나. 터널	1) 연장 300m 미만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2)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터널 3) 연장 100미터 미만인 지하차도 4)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있는 철도터널
다. 육교	보도육교
라. 옹벽	1)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100미터 이상인 옹벽 2)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40미터 이상인 복합식 옹벽
마. 그 밖의 시설물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교량·터널·옹벽·항만·댐·하천·상하수도 등의 구조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과 이와 구조가 유사한 시설물

2. 건축분야: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시설물(다목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시설물

구분	대상범위
가. 공동주택	1) 5층 이상 ~ 15층 이하인 아파트 2) 연면적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연립주택 3) 연면적 660제곱미터 초과인 기숙사
나. 공동주택 외 건축물	1)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및 자원순환관련 시설은 제외한다)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한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3)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집회장만 해당한다), 종교시설 및 운동시설 4)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위락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5)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업무시설(외국공관은 제외한다) 6)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다. 그 밖의 시설물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 항목별 정의에 대한 국내 기준

시설물 통계 기준	국내기준(타 법과 비교)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1] 및 [별표1의2]에 따라 규정	건축법, 도로법, 항만법, 수도법 등 시설물별로 기준에 따라 규정

1-2 적용 분류체계

□ 분류체계

○ 분류체계

– 시설물 종별, 시설물별 등의 통계 자료 제공

항목	기준	분류 항목 세부 내용	
종별	국내	제1종 제2종 제3종	시설물의 규모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제1,2,3종으로 분류하였으며 분류기준은 개념 및 정의의 대상범위 참고
시설물별	국내	교량	도로교량, 철도교량, 육교
		터널	도로터널, 철도터널
		항만	갑문시설, 방파제, 파제제 및 호안, 계류시설
		댐	다목적댐, 용수전용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지방상수도전용댐
		건축물	공동주택, 공동주택외의 건축물(용도별, 규모별, 철도역시설, 지하도상가), 기타건축물
		하천	하구둑, 수문 및 통문, 제방, 보, 배수펌프장
		상하수도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지방상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옹벽	도로옹벽, 철도옹벽, 항만옹벽, 댐옹벽, 건축물옹벽, 기타옹벽
		절토사면	도로사면, 철도사면, 항만사면, 댐사면, 건축물사면, 기타사면
		공동구	공동구
		기타	-

1-3 보고양식 구성

□ 구성

○ 시설물의 기본현황, 상세제원, 내진정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이력 등의 정보

□ 보고양식의 항목 및 구성이 보고자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검토한 결과

○ 지속적인 교육 실시*를 통해 보고자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찾아가는 FMS 사용자 맞춤 설명회 및 시설물 유지관리 정책설명회 개최

1-4 보고양식 변경 절차 및 변경 이력

□ 변경 절차

○ 보고양식 변경 절차

- 시설물안전법 개정 등에 따라 보고양식의 변경 또는 확대가 필요한 경우 내·외부 전문가 검토 및 자문을 통해 양식 변경 및 신설

○ 변경이력

- 2016 : 시설물안전법 개정(2016.01.01. 시행)에 따른 보고 대상 '공동구' 추가
- 2018 : 시설물안전법 개정(2018.01.18. 시행)에 따른 보고 대상 '제3종시설물' 추가
- 2020 : 시설물안전법 개정(2020.02.21. 시행)에 따른 보고 대상 '제3종시설물 중 옹벽 및 기숙사' 추가

2. 보고대상 및 통계작성대상

□ 보고대상

○ FMS에 "시설물관리대장" 기본현황 및 상세제원을 입력

<예시. 시설물관리대장(건축물)>

1. 기본현황(공통)

<table>
<tr><td rowspan="2">시설물번호</td><td rowspan="2">관리번호</td><td rowspan="2">(*)시설물명</td><td colspan="4">(*)시설물분류</td></tr>
<tr><td>시설물종별</td><td>시설물구분</td><td>시설물종류</td><td>SOC
성능평가대상</td></tr>
<tr><td></td><td></td><td></td><td>1·2·3종,
기타</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주소</td><td>노선</td><td>(*)관리주체</td><td>관리주체
구분</td><td colspan="2">소유자</td><td>(*)소유자 구분</td></tr>
<tr><td colspan="2">(GPS 좌표 선택)</td><td></td><td></td><td>공공/민간</td><td colspan="2"></td><td>중앙부처/지자체/
공공기관/민간</td></tr>
<tr><td>사업계획
승인일</td><td>(*)준공
(사용승인)일</td><td>(*)하자담보
책임만료일</td><td colspan="2">상세제원</td><td colspan="2">관리주체의
설계도서 보존</td><td colspan="2">설계도서사본
공단제출</td></tr>
<tr><td></td><td></td><td></td><td colspan="2">유/무</td><td colspan="2">보존/미보존</td><td colspan="2">대상/비대상-제출/미제출</td></tr>
<tr><td colspan="2">설계기간</td><td>설계자</td><td colspan="2">(*)공사기간</td><td colspan="2">(*)시공자</td><td colspan="2">(*)시공비(백만원)</td></tr>
<tr><td colspan="2"></td><td></td><td colspan="2"></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감리기간</td><td>감리자
(책임감리원)</td><td colspan="2">공사발주자</td><td colspan="2">공사명</td><td colspan="2">공사감독·관리관</td></tr>
<tr><td colspan="2"></td><td></td><td colspan="2"></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내진설계 대상 유무</td><td>(*)내진설계적용
유무</td><td>(*)내진설계적용
기준</td><td colspan="2">(*)내진성능평가 실시
유무</td><td>(*)내진보강
유무</td><td>(*)환기구덮
개유무</td></tr>
<tr><td colspan="2">대상/비대상</td><td>적용/미적용</td><td></td><td colspan="2">실시/미실시</td><td>실시/미실시</td><td>유/무</td></tr>
<tr><td colspan="2">(*)전경사진</td><td colspan="2">(*)정·측면, 기타사진</td><td colspan="4">(*)영21조대상</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2"></td><td colspan="4"></td></tr>
<tr><td>(*)감리대상여부
(예/아니오)</td><td colspan="2">대상/비대상</td><td colspan="2">임시사용승인일</td><td colspan="3"></td></tr>
<tr><td>시특법 편입일</td><td colspan="6"></td></tr>
<tr><td>비고</td><td colspan="2"></td><td colspan="2">시설물관리 근거법령</td><td colspan="3"></td></tr>
<tr><td>대표시설물</td><td colspan="2"></td><td colspan="2">인허가기관</td><td colspan="3"></td></tr>
<tr><td>증빙문서첨부</td><td colspan="6"></td></tr>
<tr><td>고유식별번호(UFID)</td><td colspan="2"></td><td colspan="2">위치정보</td><td colspan="3">X좌표 : / Y좌표 :</td></tr>
<tr><td>작성자</td><td colspan="2"></td><td colspan="2">작성일</td><td colspan="3"></td></tr>
</table>

2. 상세제원

<table>
<tr><td>시설물명</td><td>(*)주용도</td><td>세대수(주택)</td><td>층별용도</td><td colspan="3">기타용도</td></tr>
<tr><td></td><td></td><td></td><td></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4">(*)층수</td><td colspan="3">최고층고</td></tr>
<tr><td>지상(옥탑제외)</td><td>옥탑(지상층수제외)</td><td>지하</td><td>최고높이</td><td>높이</td><td colspan="2">해당층</td></tr>
<tr><td>층</td><td>층</td><td>층</td><td>m</td><td>m</td><td colspan="2">층</td></tr>
<tr><td colspan="2">(*)구조형식</td><td colspan="2">지정형태</td><td colspan="3">기초형식</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2"></td><td colspan="3"></td></tr>
<tr><td>기초밑면 깊이</td><td>대지면적</td><td>건축면적</td><td>(*)건축 연면적</td><td>건폐율</td><td colspan="2">용적율</td></tr>
<tr><td>G.L. m</td><td>㎡</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설계지하수위</td><td rowspan="2">콘크리트 설계강도</td><td rowspan="2">철근강도</td><td rowspan="2">철골강도</td><td colspan="3">방수공법</td></tr>
<tr><td>지붕층</td><td>지하층</td></tr>
<tr><td>G.L. m</td><td>MPa</td><td>MPa</td><td>MPa</td><td></td><td></td></tr>
<tr><td rowspan="2">주차시설</td><td>주차면적</td><td>옥내주차 면적</td><td>옥외주차 면적</td><td>주차대수</td><td>옥내주차 대수</td><td>옥외주차 대수</td><td>일시최대 사용인원</td><td colspan="3">1일 사용인원</td></tr>
<tr><td>㎡</td><td>㎡</td><td>㎡</td><td>대</td><td>대</td><td>대</td><td>명</td><td colspan="3">명</td></tr>
<tr><td rowspan="4">설 비</td><td rowspan="2">환기 (공조) 방식</td><td rowspan="2">기계식일 경우 배기닥트 유무</td><td rowspan="2">물탱크 위치</td><td rowspan="2">변전실 위치</td><td rowspan="2">유류저장 시설위치</td><td rowspan="2">오수정화 시설위치</td><td colspan="3">승 강 기 대 수</td></tr>
<tr><td>승객용</td><td>화물용</td><td>비상용</td></tr>
<tr><td>자연식/ 기계식</td><td>유/무</td><td>지붕/중간 /지하</td><td>지붕/중간/ 지하</td><td>옥외/옥내</td><td>옥외/옥내</td><td>대</td><td>대</td><td>대</td></tr>
<tr><td colspan="2">중앙냉방</td><td colspan="2">중앙난방</td><td colspan="3" rowspan="2">전기인입용량</td></tr>
<tr><td>냉방유무</td><td>냉방열원</td><td>난방유무</td><td>난방열원</td></tr>
<tr><td>유/무</td><td></td><td>유/무</td><td></td><td colspan="3">kw</td></tr>
<tr><td colspan="2">정화조 형식</td><td colspan="2">건물유지관리시스템</td><td>유지관리 부대시설</td><td colspan="3">승강기 운영방식</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2">유/무</td><td>유/무</td><td colspan="3"></td></tr>
<tr><td>용도별비율</td><td colspan="7">업무용 : % / 상업용 : % / 주거용 : % / 특수용 : % / 경기장,체육관 : %</td></tr>
<tr><td>기타상세제원</td><td colspan="7"></td></tr>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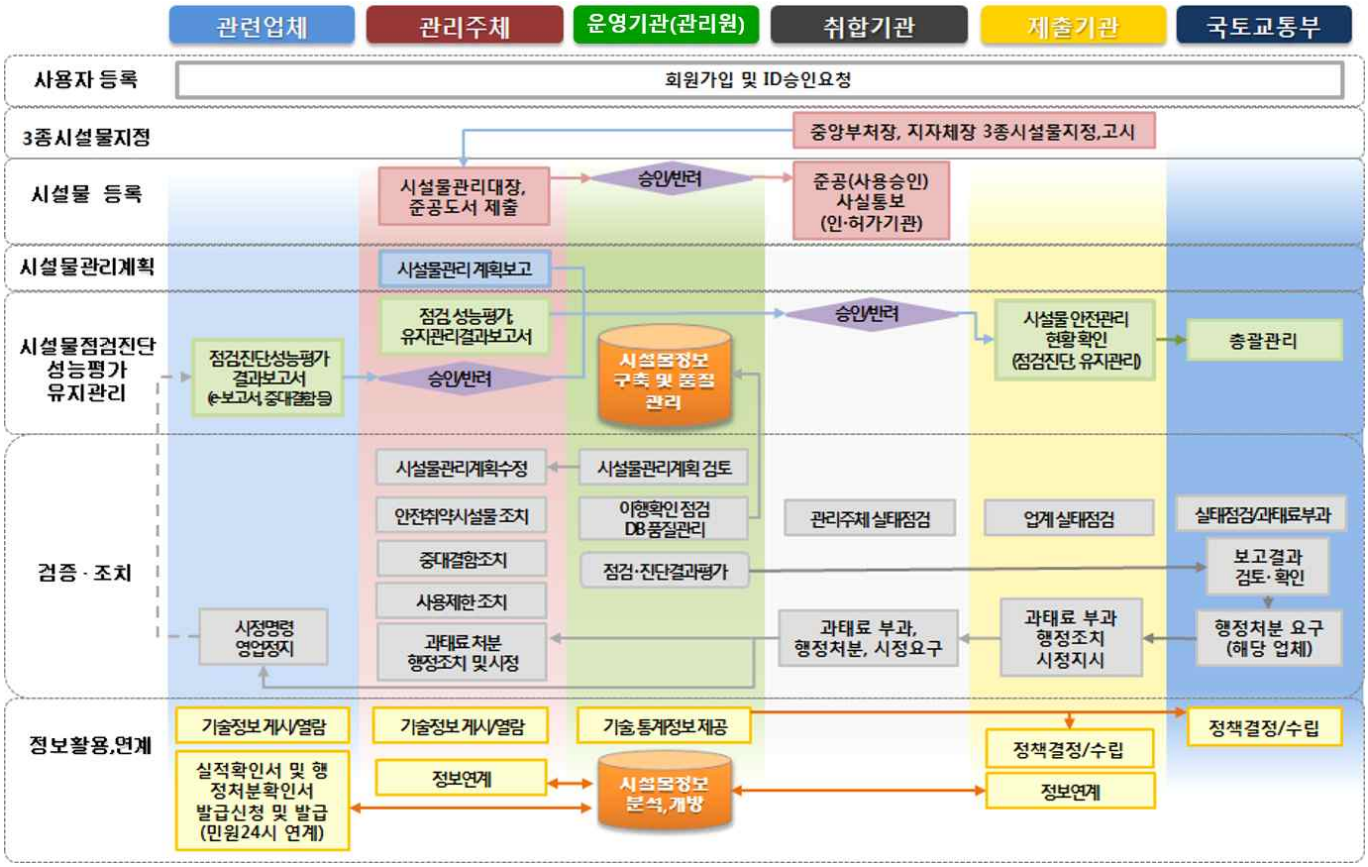
□ 통계작성대상

○ 시설물종별현황, 시도별 시설물증감대비현황, 시설물별 증감대비현황, 시설물 안전법분류별 현황(교량, 터널, 항만, 댐, 상하수도, 건축물, 하천, 옹벽, 절토사면, 공동구, 기타)

Ⅳ. 자료수집

1. 자료수집 체계 및 절차

□ 통계작성을 위한 자료수집 체계



□ 최초 보고자(등록자) 단계에서 전산입력, 오류점검, 집계 자료 등의 과정

○ 최초보고자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정보(시설물관리대장 등)를 입력하면서 오류 점검을 수행하고, 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토대로 준공(사용승인)을 하고 있으므로 처리과정에서 검증되고 있음

○ 또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취합기관에서 내용을 검수·승인을 하며,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시설물관리대장 제출 시 시설물의 구분 및 규모 등에 따라 적절히 분류가 되었는지 검증 하고 오류가 발견된 경우 시설물관리대장을 반려하여 재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 FMS에서 시설물관리대장이 승인이 되지 않으면, 향후 시설물의 유지관리 관련 정보를 일절 등록할 수 없음

2. 자료수집을 위한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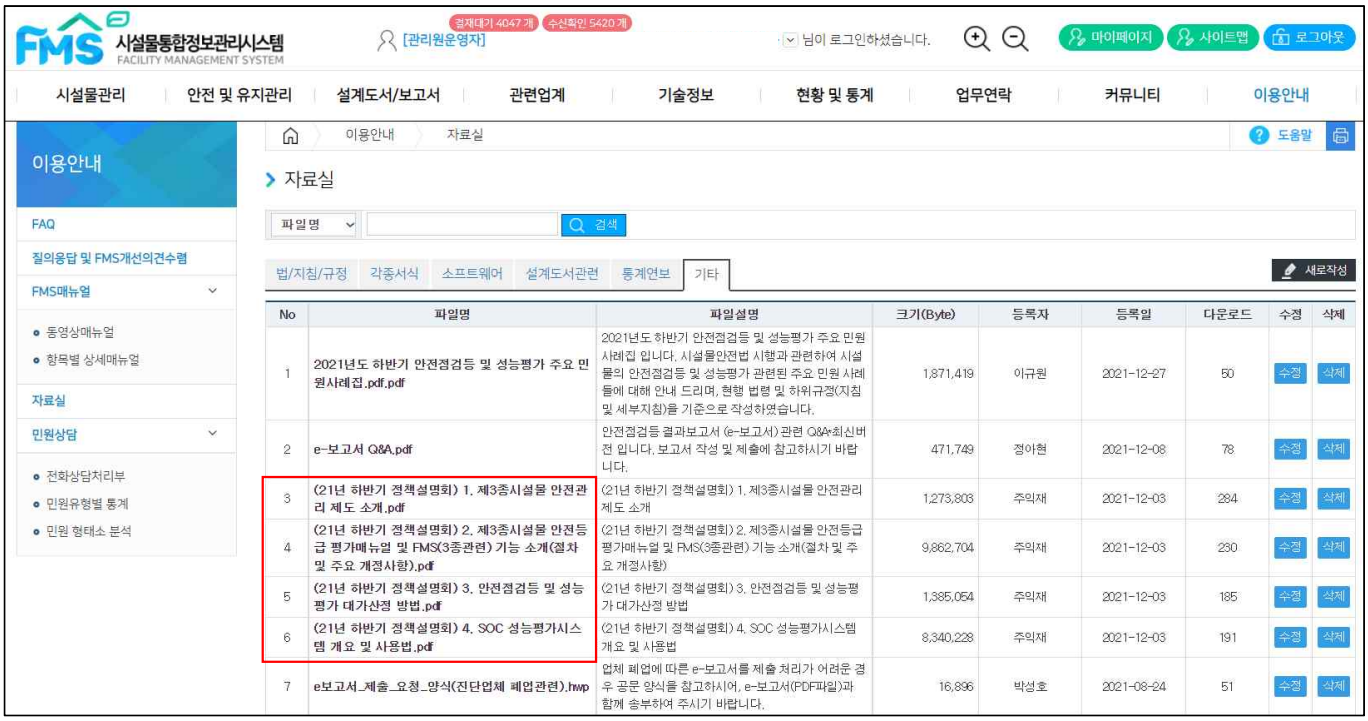
□ 보고담당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

○ 매년 상·하반기 FMS에 정보를 입력 및 승인하는 주체를 대상으로 시설물안전법

의무사항과 FMS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교육 실시 전 FMS 사용자의 참석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일시 및 장소를 공지하고, 교육교재를 자료실에 게시 함

<FMS 설명회 교육자료 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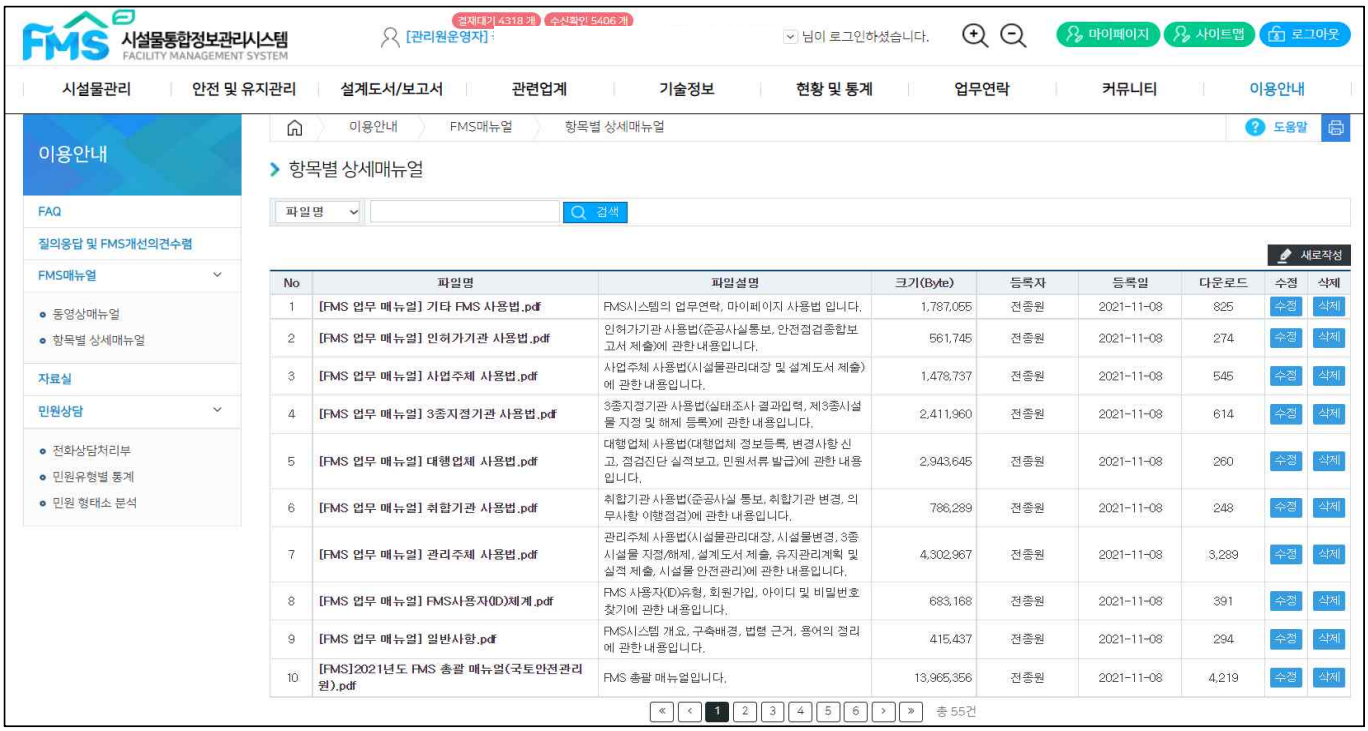


□ 보고단계에 대한 의문사항 발생 시 조치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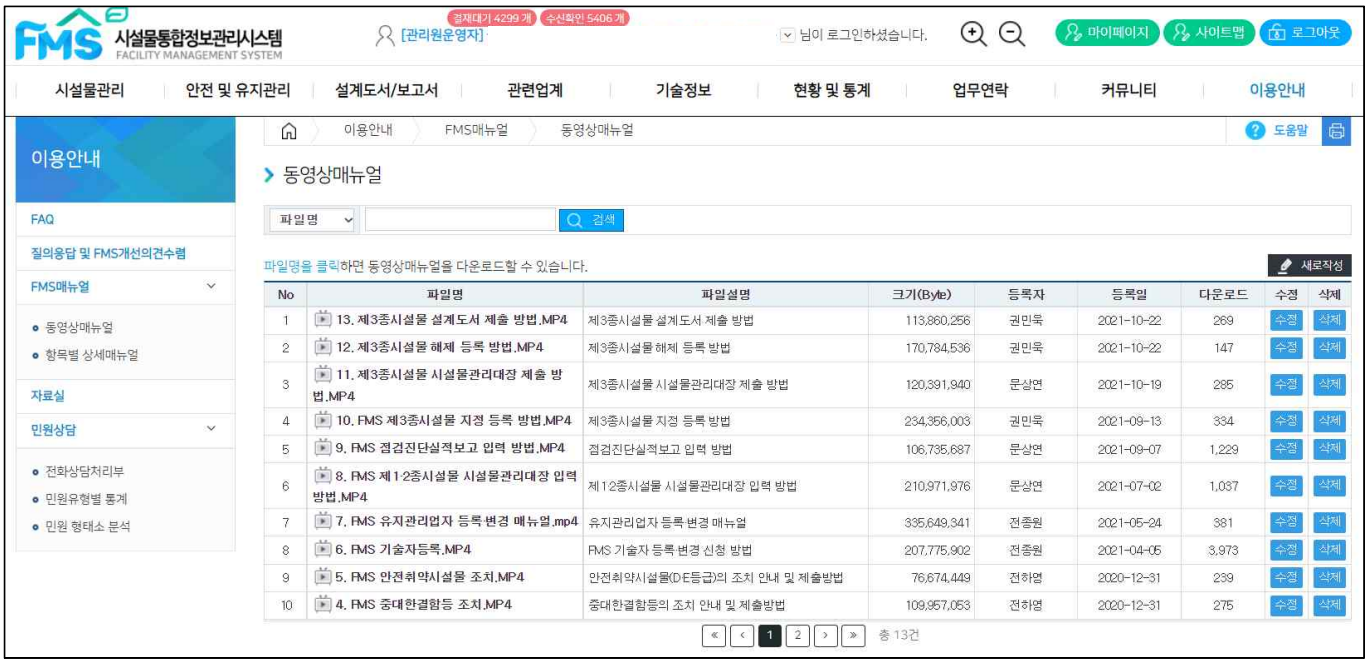
○ FMS에 시설물정보 입력 방법 등 시스템 사용법 매뉴얼 게시함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각종 시설물정보, 유지관리정보를 원활히 보고할 수 있도록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콜센터(1588-8788)를 운영하고 있으며(2021년 기준 일평균 349건 민원 해소), 국토안전관리원 내부에서도 시설성능관리실을 운영하여 보고담당자가 보고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의사항 및 민원에 대해 적절히 조치하고 있음

<FMS 사용법 공지>



<FMS 동영상 매뉴얼 공지>



□ 보고양식 변경 시, 담당자 교육 실시

○ 보고양식이 변경되는 경우, 매년 상·하반기 시설물안전관리 담당자 대상 시설물 안전법령 및 FMS 사용법 교육 시 변경사항을 포함하여 교육하고 있음

– '21년도 FMS 사용법 교육실시 현황

번호	기간*	지역
1	2021.06.09. ~ 06.11.	온라인 비대면 설명회**
2	2021.07.26. ~ 10.28.	부산,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남
3	2021.12.06. ~ 12.08.	온라인 비대면 설명회

* 매년 상·하반기 시설물 유지관리 정책설명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FMS 사용자 맞춤 설명회를 통해 수시 교육을 시행하고 있음

**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설명회 실시

Ⅴ. 자료처리

1. 자료입력 표준화

□ 보고결과 자료의 코딩(부호화) 방법, 내용, 코드체계

○ 시설물정보현황 자료 구조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은 java 및 oracle을 기반으로 구축된 시스템이며 시설물형식, 지역, 교육, 설계도서 제출여부 등을 분류하여 코드화 하여 관리

코드(컬럼)명	설명
FACIL_NO	시설물번호
FACIL_NM	시설물명
CHG_REASON_CD	변경사유코드
CHG_REASON_NM	변경사유
MNG_MAIN_CD	관리주체코드
FACIL_CLASS	시설물종별
FACIL_GBN	시설물구분
FACIL_KIND	시설물종류
FACIL_DESC_CD	세부분류코드
FACIL_FORM_CD	시설물서식코드
ADDR_SIDO	주소_시도
ADDR_GUGUN	주소_구군
ADDR_DONG	주소_읍면동
ADDR_DETAIL	주소_기타
CPL_YMD	준공일
TEMP_YMD	임시사용승인일
GAM_REASON_CD	감리비대상사유
SPEC01	시설물제원01

□ 보고 자료의 전산입력방법, 내용 및 입력오류 검출을 위해 적용한 방법

○ 보고주체는 FMS(www.fms.or.kr)를 이용하여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며, 이용 편의 도모를 위해 FMS 시스템 사용법을 자료실에 게시하고 있음

○ 보고주체는 시설물관리대장 제출 시 관리주체의 확인단계를 거쳐 해당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적으로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검수 후 승인하고 있음

○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시설물관리대장을 검수 시 오류를 발견한 경우, 해당 자료를 반려하여 향후 유지관리정보 일체를 등록하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주체는 오류 정보(반려 사유)를 수정하여 재승인 요청을 하여야 함. 따라서 내용 및 입력 오류에 있어 수회의 검수 및 검증 과정을 통한 입력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음

○ 또한,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FMS의 입력정보 확인요청 공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여 입력 오류 검출을 진행하고 있음(2021년 관리주체 2,739개, 시설물 11,357개 확인 요청)

2. 자료내검

□ 보고 단계별 자료의 중복, 누락 등에 대한 확인 및 보완 방안

○ 중복에 대한 확인 및 보완 방안

– 보고주체가 시설물 정보 입력 및 제출 시 반드시 기존 등록된 시설물과의 중복여부를 확인한 후 입력 및 제출이 가능함

○ 누락에 대한 확인 및 보완 방안

–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물 중 FMS에 등록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 타 정보시스템과의 정보 비교·검토를 통하여 미등록 시설물 확인 요청을 하고 있음

– NSDI 등 타 시스템에서 관리되는 시설물 중 FMS 제출 대상 등록 유도(2021년 기준 시설물 50개 제출 독려)

□ 자료내검(현장, 입력 등)의 제반 단계, 방법, 오류자료 처리방법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이용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료 입력 시 오류를 확인하고 수정함

– 입력된 자료는 국토안전관리원의 승인을 거쳐야하며, 시설물정보에 오류가 포함된 경우 검수자가 반려하여 오류자료를 수정 후 재승인 요청을 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

3. 무응답

□ 주요 항목에 대한 무응답률 관리

○ 주요항목은 필수 입력항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미입력 시 자료 제출 불가

○ 필수 입력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선택 입력된 항목에서 필수 입력 항목으로 변경된 무응답 정보일 경우 FMS 시설물관리대장 입력오류 기능을 통해 정보 수정을 독려하고 있음

<FMS 시설물관리대장 입력오류>



4. 이상치 식별 및 처리

□ **이상치 처리 기준**

○ 시설물정보현황 수집 시 대부분의 항목이 유효성 검사 되어 있어 사전에 이상치가 등록되지 않음

○ 다만, 검수과정에서 이상치가 발견될 경우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제45조에 따라 FMS에 입력된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정보입력 및 승인기관에 정보 확인 및 수정요청을 실시하고 있음

Ⅵ. 통계공표 및 품질평가

1. 공표통계 및 해석방법

□ 주요 통계표, 그래프 등 공표

○ 매년 공표하는 통계연보(E-BOOK)에는 주요통계표, 그래프 및 해석방법 및 이용시 유의사항 등이 기술되어 있음

<2021년 5월에 공표된 시설물정보현황 통계연보>



2.1 시설물 현황

2.1.1 시설물 전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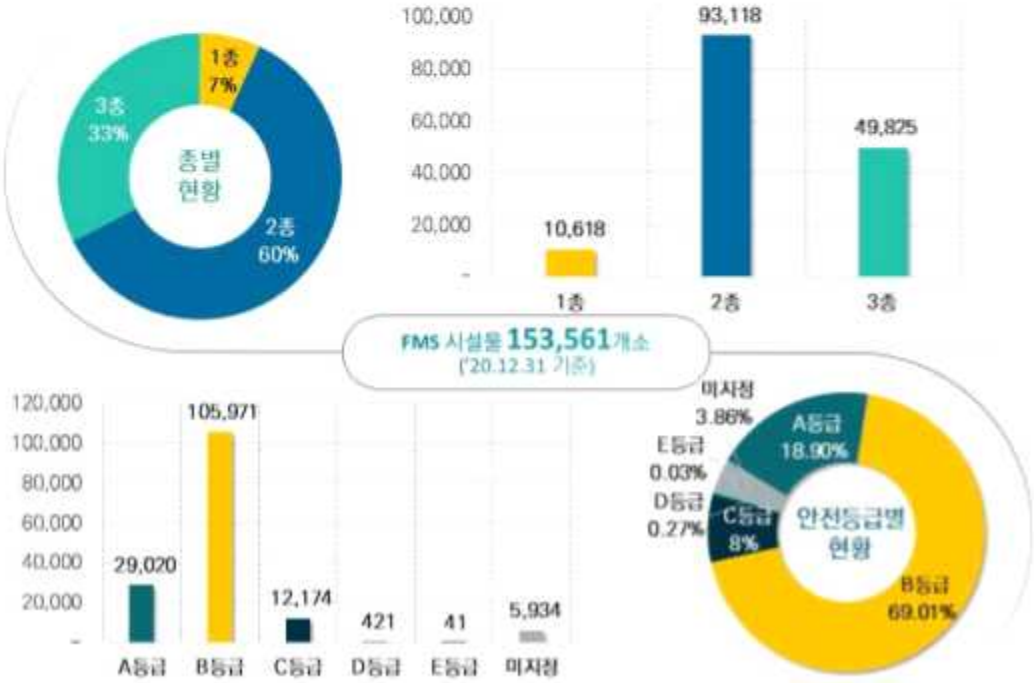
- '20년도 12월 말 기준, FMS에 등록되어 있는 시설물은 총 153,561개소로 집계되었다.

- 등록된 시설물 중 제1종시설물이 10,618개소(6.91%), 제2종시설물이 93,118개소(60.64%), 제3종시설물이 49,825개소(32.45%)로 제2종시설물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안전등급은 B등급인 시설물이 105,971개소로 전체의 69.01%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D·E등급인 시설물(이하, '안전취약시설물')은 462개소로 전체 시설물의 0.3%로 나타났다.

[표 2.1.1] 2020년도 시설물 종별 및 안전등급별 현황

총계	종별			안전등급별					
	1종	2종	3종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미지정
153,561	10,618	93,118	49,825	29,020	105,971	12,174	421	41	5,934
(100.00%)	(6.91%)	(60.64%)	(32.45%)	(18.90%)	(69.01%)	(7.93%)	(0.27%)	(0.03%)	(3.86%)



[그림 2.1.1] 2020년도 시설물 종별 및 안전등급별 현황

□ 해석방법 및 이용 시 유의사항 등을 기술

<2021년 5월에 공표된 시설물정보현황 통계연보>

이용자를 위하여

1. 본 통계연보는 우리나라 주요 시설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제1·2·3종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현황을 통계자료로 수록한 것으로서 시설물관리주체에서 등록·관리하고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운영 중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https://www.fms.or.kr)에 구축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2. 「2021년 시설물통계연보」는 관리주체, 안전진단전문기관 등 FMS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본 통계연보 발간 당시의 정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각 통계서식에서 제1·2·3종시설물의 종별, 안전등급별, 소관기관별, 소재지별, 사용연수별로 주요 지표에 대해서 시계열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통계자료를 수록하였으며, 본 통계연보의 수치와 전년도 통계연보의 수치가 일치하지 않은 것은 당해 연도에 정정된 것입니다.

4. 본 통계연보는 각 시설물의 관리주체 등 사용자가 FMS에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작성하였기에 실제 정보와 일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논문이나 연구목적 등을 위해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유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5. 본 통계연보는 발간과 동시에 FMS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수록된 자료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국토안전관리원」 시설안전관리실(1588-87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정시성 및 시의성

2-1 통계작성/보고대상 기준시점과 공표시기

□ 보고대상 시점(또는 기간)과 공표시기

○ 보고대상 기간 : 1년

○ 보고대상 연도의 익연도 5월 말

□ 기간 단축 가능성 검토 결과

○ 현재 1년의 시의성을 두고 통계를 공표하고 있지만, 통계발생시점인 연말을 기준으로 익연도의 5월에 공표를 하고 있음, 따라서 기간 단축 가능성 검토 결과 단축할 수 없음

2-2 공표일정

□ 사전에 계획 및 공개된 통계 공표 일정과 공개방법

○ 매년 4~5월에 전년도 자료 FMS에 게시

□ 최근 공개된 공표일정과 실제 공표시기

○ 공표일정 : 익년 5월 말

○ 실제 공표시기 : 익년 5월 말

○ 공표방법

– 인터넷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및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등 홈페이지에 공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홈페이지(www.fms.or.kr)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www.kalis.or.kr)

3. 비교성

3-1 통계 작성방법의 비교성

□ 통계의 개념, 분류기준, 보고기준, 보고시기 등의 동일성

○ 시설물안전법 개정 등으로 인해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의 범위가 변경된 내역 있음. 그 외의 개념, 보고기준, 보고시기 등은 매년 동일하게 적용되었음.

– 2016 : 시설물안전법 개정(2016.01.01. 시행)에 따른 통계 대상 '공동구' 추가

– 2018 : 시설물안전법 개정(2018.01.18. 시행)에 따른 통계 대상 '제3종시설물' 추가

– 2020 : 시설물안전법 개정(2020.02.21. 시행)에 따른 통계 대상 '제3종시설물 중 옹벽 및 기숙사' 추가

3-2 시계열 비교성

□ 시계열 단절 유무

○ 없음

4. 통계활용 실태

□ 자료 접속 횟수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정보를 활용한 건수

구분	연도별 실적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연간 FMS 사용자별 활용건수	680,111	782,122	1,205,382	1,771,890	2,667,131	2,498,541

Ⅶ. 통계작성 문서화 및 이용자서비스

1. 통계작성 문서화

□ 통계작성 절차별 문서화 현황

○ 자료수집 방법 : 시스템을 통한 자동 집계
○ 자료입력/내검 지침서 : 매뉴얼을 작성 및 배포
○ 현장조사관리 : 시스템을 통해 집계됨으로 해당 없음
○ 공표자료 제공 방법 : 관련 웹사이트에 등재(자체 공표하는 통계연보 포함)

2. 통계 이용자 서비스(접근성 및 명료성)

□ 통계가 이용자에게 서비스되는 경로

서비스 경로, 인터넷 주소	제공 자료
국가통계포털 (국내통계 - 주제별 통계 - 건설 - 시설물정보현황 http://kosis.kr/statisticsList)	시설물 종별, 시설물 증감대비표(시도별), 시설물 증감대비표(시설물별), 시설물분류별현황 통계자료
공공데이터포털 (http://www.data.go.kr)	세부시설물 통계현황, 진단장비보유현황, 시설물분류별·시도별·종별 통계현황 등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https://www.fms.or.kr)	실시간 시설물 현황, 안전 및 유지관리현황 등의 통계자료 상시 공표

□ 통계의 담당자 또는 이용관련 문의 연락처

국토안전관리원	
시설성능관리실장(통계사업 책임자)	055-771-8320
정보관리팀장(통계사업 실무 책임)	055-771-8322
통계 실무 담당자	055-771-8330
기반시설본부 시설성능관리실	
○ 시스템 사용 관련 콜센터 : 1588-8788 ○ 자료 관련 전화번호(055-771-내선번호) - 시설물 정보관련 : 8339, 8485 - 통계 및 자료요청 : 8330	

□ **통계 설명 자료 소재 정보**

○ 국토교통통계누리(stat.molit.go.kr) : 개요, 주요항목, 의미분석 설명

○ e-나라지표(www.index.go.kr) : 의미분석, 유의점, 관련용어, 작성방법 등 설명

○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 포괄적 통계설명 자료 수록

○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 시설물 정보, 안전관리 현황 등 제공

3.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 원칙적으로는 마이크로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지 않음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제27조에 따라 운영기관은 FMS에 입력된 시설물 중 민간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일부 시설물의 상세주소, 준공일 등을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따라서 민간시설물의 비공개 정보를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는 제공하고 있지 않음

○ 해당 공공기관에서 해당기관에 대한 마이크로데이터를 제공 요청할 경우에 한하여 제공

-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요청 및 제공은 “공문”을 원칙으로 함

4. 비밀보호 및 보안

4-1 자료 수집, 처리 및 보관 과정의 비밀보호

□ **자료의 수집, 입력, 전송, 처리 및 보관과정에서 응답자 비밀보호**

○ 각 개별 시설물의 관리주체(담당자)가 직접 시스템에 접속하여 보고한 내용을 집계하고 있음

○ 수집과정 : 시스템에 접속하여 성명, 연락처 등을 보고자가 직접 작성하고 시설물 정보를 입력하고 있음, 자료의 접근은 보고자 및 해당 시설물정보 결재권자(취합기관, 제출기관) 및 시스템 관리자만 접근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현됨

* 시스템에 로그인하기 위해 발급받는 사용자 아이디는 시스템 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가능

4-2 공표자료의 비밀보호

□ **공표 자료에서 응답자 식별가능성 제거를 위하여 취한 조치와 방법**

○ 공표 자료의 경우 식별가능 조사항목을 제외하고 시설물별/시설물종별/시·도별/세부시설물별 통계만 제공

□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과정에서 응답자 식별가능성 제거를 위하여 취한 조치와 방법**

○ 운영규정에 공개를 제한하고 있는 민간 시설물에 대한 자료 유출을 방지하고자 원칙적으로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제공하고 있지 않음

4-3 자료 보안 및 접근제한

□ 자료의 수집, 처리 및 보관과정에서 유실, 유출, 훼손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방법, 법령(규정)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제45조에 따라 운영기관(국토안전관리원)은 시설물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확인 및 점검을 받는 기관은 이에 임해야 함

> 제45조(FMS 입력자료의 신뢰성 확보 등) ① 운영기관은 FMS에 입력된 시설물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입력 및 승인기관(관리주체 포함)에 방문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해 확인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1. 시설물관리대장 등 FMS 입력정보의 누락 또는 오류
> 2. 법령상 관리주체의 의무이행 여부
> 3. 기타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확인 및 점검을 받는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입력된 정보의 누락 또는 오류의 수정을 요청받은 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또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제45~51조에 따라 운영기관(국토안전관리원)은 보안, 백업, 장애복구 등을 통해 위조·변조·훼손·멸실 또는 전자적 침해행위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49조(보안) 운영기관은 FMS로 관리되는 전산자료 및 데이터베이스의 위조·변조·훼손·멸실 또는 전자적 침해행위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0조(백업) ① 운영기관은 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파괴·변조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관련 자료를 백업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백업자료는 도난·훼손·멸실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 제51조(장애복구) ① 운영기관은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요인을 확인하고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운영기관은 사용자로부터 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이상을 통보 받았거나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점검을 시행하고, 장애발생 시 신속히 복구하여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Ⅷ. 통계기반 및 개선

1. 기획 및 분석 인력

□ 업무 담당 부서명 및 업무별 담당인력 구설 / 근속연수

○ 부서명 : 국토안전관리원 시설성능관리실 및 디지털혁신추진단

역할	전공	경력(년)	통계업무 담당년수
통계 기획 및 공표 총괄	건축공학	25	9
통계의 기획	토목공학	20	4
자료처리, 분석 및 서비스	건축공학	9	6
	토목공학	2	1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전산학	4	-
자료처리 및 보고양식 설계	토목, 건축, 국토안전관리원 내·외전문가 검토		

□ 최근 3년간 통계관련 교육과정 이수 내역

연도	교육기관	과정명	참여인원수
2021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통계 DB 관리시스템 이용자 교육	1
2020	-	-	-
2019	통계청	통계품질진단 교육	1

2. 사업예산

□ 사업예산

○ 시설물정보현황에 대한 사업예산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의 사업예산에 포함되어 있음

- 시설물정보통계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집계되므로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음

3. 자료처리 시스템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장비

분류	품명	규격
HW	WEB서버	CPU : 3.89GHz POWER8 Proc * 12Core
HW	WAS서버	CPU : 3.89GHz POWER8 Proc * 12Core
HW	DB서버	CPU : 3.89GHz POWER8 Proc * 12Core
HW	Storage	DualActive/Active구성

분류	품명	규격
HW	Storage	DualController(Active-Active)
HW	L4 switch	1000Base-T8포트이상 1000Base-X16포트이상제공
기타 Storage 등		

4. 통계 품질관리 및 개선

□ 통계 품질 관리 및 개선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

- 시설물 정보 입력 시 관리주체의 확인과 국토안전관리원의 검수 및 승인 과정을 거치므로 오류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보고 단계에서 정확한 자료 등록율을 높일 수 있음
-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fms.or.kr

○ 타 시스템과 정보 비교 후 등록 확인요청을 통한 누락시설물 조기 방지

- NSDI(국가공간정보센터) 등 타 시스템과 정보 비교 후 FMS에 등록 여부 확인을 요청하여 누락시설물 방지 실시

Ⅸ. 참고문헌

1. 국제기준 또는 권고안

□ 항목별 정의에 대한 국내 기준

○ 시설물의 항목별 정의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1] 및 [별표1의2]에서 규정

2. 동일통계 외국자료

□ 주요 외국 유사 통계

○ 미국 교통부 연간 통계 보고 자료 :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 Transportation Statistics Annual Report
- 소재 인터넷 주소 : https://www.bts.gov/tsar

3. 기타 문헌

□ 해당 통계와 관련된 연구문헌 또는 정책보고서, 통계가 수록된 국내외 보고서

○ 국토교통 통계연보 : 국토교통부

- 시설물정보 및 안전진단전문기관 통계 수록

○ 미국 토목학회 연간 보고 자료 : America Society Civil Engineering

- Infrastructure Report Card
- 소재 인터넷 주소 : https://www.infrastructurereportcard.org/